##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03

발의연월일: 2024. 8. 28.

발 의 자: 장철민 · 민병덕 · 박정현

한정애 · 강선우 · 조승래

황정아 · 전현희 · 임오경

정진욱 • 박지원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임.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내에 있는 핵심자원에 대해서도 공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. 가령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 영일만 앞 '대왕고래'석유 시추 사업에 대해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혀, 핵심자원인 석유 및 가스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등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 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 고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(안 제13조 제목 및 제3항부터 제5 까지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의 제목 중 "지원"을 "지원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국내 핵심자원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투자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의 투자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 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.
- ⑤ 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작성 방법 및 상임위원회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 특	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 특
별법 일부개정법률	별법 일부개정법률
제13조(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	제13조(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
반 확충 <u>지원</u> ) ①·② (생 략)	반 확충 <u>지원 등</u> ) ①·② (현행
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
	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
	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국내
	핵심자원에 500억원 이상을 투
	자하는 경우 투자계획서를 국
	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
	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④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
	3항의 투자계획서를 검토한 후
	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
	<u>려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⑤ 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서의
	작성 방법 및 상임위원회 승인
	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	<u>로 정한다.</u>